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남태현
농림부 축산물 유통과 사무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일정액의 재원으로 안정 제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사업시행기관인 축협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생산한 송아지의 거래가격(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의 단순 재생산을 확보하는 수준(안정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그 차액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번식농가에게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선 '98.7.16 ~ '99.12.31까지 전국 1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평가 결과 및 농가호응도에 따라 전국 확대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 '98년 7월 16일부터 계약이 시작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 실시요령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1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실시요령 및 전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98.7.16부터 계약이 시작되었으며 '99.12.31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사업추진절차를 보면 우선 사업시행기관인 축협중앙회장은 안정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안정기준가격과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금(계약자부담금)을 사업개시전까지 고시 또는 공고하고 지역축협장은 청약기간 개시전부터 청약

(실시지역)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안성시 | 춘천시 | 청원군 | 공주시 | 임실군 | 순천시 | 영주시 | 남해군 |
| 여주군 | 횡성군 | 보은군 | 홍성군 | 정수군 | 장흥군 | 영천시 | 하동군 |

기간 종료시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의 계약내용을 공고 및 홍보한다.

계약을 원하는 한우암소 사육자는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을 방문하여 계약기간중 계약우별 송아지생산두수(계약생산송아지 두수)를 추정하여 계약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역축협으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계약우가 송아지를 생산하면 생후 14일 이내에 지역축협에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받은 지역축협은 생후 2개월 이내에 계약우로부터의 생산을 확인하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바코드키표를 부착한다.

축협중앙회장은 바코드키표부착을 완료한 송아지가 생후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4~5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평균거래가격 고시후 20일 이내에 보전금을 계약자의 통장에 이체한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사업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중 계약을 원하는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

◆ 계약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의 한우암소 사육자 (법인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는 제외

◆ 계약대상우 : 바코드키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 암소

(사업추진절차)



※ 귀표가 없는 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부착해야 함

◆ 청약기간 : '98.7.16 ~ 9.30

◆ 청약장소 : 계약대상자의 사업장소재지 지역축협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99.12.31

- 시범사업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적용될 안정기준 가격 : 700,000원

-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계약자부담금 : 10,000원

☒ 계약시 계약자 준비사항

○ 계약자부담금, 주민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축협통장

○ 계약대상우의 바코드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 임신중이면 임신개월수, 임신예정우면 수정예정월을 기록하여 지참

※ 귀표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므로 귀표번호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송아지생산신고 및 생산확인

◆ 계약우가 계약기간중(체결일 ~ '99.12.31까지)에 계약우별 계약생산송아지두수 내에서 한우송아지 생산시, 계약자는 그 사실을 송아지 생후 14일 이내에 신고

※ 기간내 송아지생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

여한 후 송아지 생후 2개월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계약우로부터의 생산을 확인하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실시요령에 의한 바코드귀표를 부착

◆ 송아지에 대한 바코드귀표 부착은 보전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전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는 바코드귀표를 부착하지 않는다. 즉 보전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송아지에 바코드귀표부착시 계약우(어미소)가 없어 계약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단, 계약우의 폐사로 계약우가 없을 경우 계약자가 그 사실을 수의사의 진단서 또는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의 제출로 증명하면 그 송아지는 귀표부착대상이 됨

- 송아지에 바코드귀표부착시 계약우 바코드귀표의 탈락 또는 심각한 훼손으로 계약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쌍자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 계약우에서 생산하기로 계약한 계약생산송아지두수 이외의 송아지

3.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가 할 일

◆ 바코드귀표번호의 현지확인 협조

○ 계약체결후 지역축협이 계약자가 제출한 귀표번호 계약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가를 방문할 때 계약자보관용계약서를 지참하고 계약우 확인에 동참

◆ 송아지생산신고 및 확인 : 위 "2."와 같음

◆ 계약의 변동신고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중 소유자, 계약우, 계약생산송아지두수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동일 시·군 지역내에서 계속사육시 승계를 인정

○ 계약자사망시 피상속인은 사유발생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승계신청

◆ 바코드귀표의 훼손 및 탈락 통지

○ 계약우 및 계약생산송아지에 부착한 바코드귀표가 탈락하였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었을 경우 계약조합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접수번호 수령



◆ 계약자의 주소 등 변경 통지

○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보전금 입금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계약조합에 14일 이내 통지하고 접수번호 수령

4.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의 지급

◆ 보전금은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미만인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으로 계약자의 송아지생산신고에 의거 바코드귀표부착이 완료된 송아지가 만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미만인 때 지급한다.

◆ 축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평균거래가격의 고시 또는 공고 후 20일 이내에 지역축협을 통하여 계약농가의 계좌에 보전금을 이체하며 지급액은 지급대상송아지두수×(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분기 평균거래가격)이며 송아지 1두당 보전금지급액의 한도는 100,000원이다.

〈 보전금 지급예시 〉

- 시범사업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적용될 안정기준가격 : 700,000원
- 송아지분만일 : '99.12.31
- 만4개월령 도달일자 : '00.4.30(2/4분기)
- 2/4분기 4~5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550,000원
- 보전금지급액 : 700,000 - 550,000 = 150,000원
 이나, 두당 보전금지급 한도액인 100,000원 지급

5. 기준가격 등

◆ 안정기준가격

○ 송아지의 생산조건 및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 단순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가격으로 안정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하고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고시 또는 공고

◆ 평균거래가격

○ 송아지의 시장 실제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격으로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산출하는 가격으로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축협중앙회장이 분기 다음달 15일 까지 고시 또는 공고

◆ 계약자부담금

○ 사업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하는 금액으로 계약적용년도 안정기준가격의 1~3% 범위에서 안정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하고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고시 또는 공고

◆ 지방자치단체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관할지역 한우암소 사육자가 축협에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

◆ 기타

○ 안정기준가격, 평균거래가격, 계약자부담금은 송아지의 성별구분없이 결정 하여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 실시요령을 중심으로 계약을 원하는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 부분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02-500-2691), 축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단(02-224-8078~80) 또는 시범사업 지역의 축협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

(필자연락처 : 02-504-9436)